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[변경 전]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[변경 후]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2. 작성기준일 : 2018.2.7
3. 효력발생일 : 2018.2.23
4. 주요 변경사항 : 모자형 구조 변경, 운용보수 인하(연 0.26% → 연 0.23%)
5. 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표지			
	모자형 구조 변경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자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
분류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투자회사, 증권(혼합채권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<추가>	투자회사, 증권(혼합채권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모자형
보수	운용보수 인하	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26% 총보수·비용 : 1.0577% 합성총보수·비용 : 1.0577%	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23% 총보수·비용 : 1.0277% 합성총보수·비용 : 1.0277%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 1. 투자목적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(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A-이상급)에 자산총액의 80%~90%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%~10%수준을,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	이 투자회사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회사로서 주로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입니다.
2. 투자전략	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<추가>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스템매매 및 공모주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회사 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

3.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 <추가> -	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 ■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-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-	-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여 소규모 합병, 모펀드 이전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 1. 투자목적 2. 투자전략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(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A-이상급)에 자산총액의 80%~90%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%~10%수준을,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<추가>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스템매매 및 공모주	이 투자회사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회사로서 주로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입니다.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

3.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 -	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 -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모자형 구조 변경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자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모자형 구조 변경	가~라. <생략> 마. 특수형태 표시 - 해당사항 없음	가~라. <이하 동일> 마. 특수형태 표시: 모자형 (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회사)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모자형 구조 변경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자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모투자신탁 운용인력 정보 추가	- <신설>	- <모투자신탁 운용인력정보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모자형 구조 변경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 투자회사, 추가형, 개방형<추가> <신설>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: 증권집합투자기구(채권혼합형) 투자회사, 추가형, 개방형, 모자형 나.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구조로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,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[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표1> 참조
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	모자형 구조 변경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(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A-이상급)	이 투자회사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회사로써 주로 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

		<p>에 자산총액의 80%~90%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%~10%수준을,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신탁(채권혼합)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입니다.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</p>	<p>모자형 구조 변경</p>	<p><변경 전1> 참조 <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신설> <변경 전2> 참조</p>	<p><변경 후1> 참조 <표2> <변경 후2> 참조</p>
<p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나. 모투자신탁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라. 수익구조</p>	<p>모자형 구조 변경</p>	<p><신설> <투자전략 및 위험관리> 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</p>	<p>이 투자회사는 채권에 80~90% 수준, 주식에 5~10% 수준을 투자하는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에 투자회사 재산의 60%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. 자투자회사에서는 특별한 위험관리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전략을 구사하므로 아래 모투자신탁 위험관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기존 투자전략내용은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로 이동> 이 투자회사는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에 60%이상 투자합니다.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</p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1.06%	1.04%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운용보수 인하	< 변경 전3> 참조	< 변경 후3> 참조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			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<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>			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총회 등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(1) 투자자총회의 구성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	(1) 투자자총회의 구성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모자형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<추가>를-<생략>-교부하여야 합니다.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추가>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	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-이하 동일-교부하여야 합니다. 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,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
6. 간이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----	------	------	------

표지			
	모자형 구조 변경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	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(채권혼합)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		
분류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투자회사, 증권(혼합채권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<추가>	투자회사, 증권(혼합채권형), 개방형(중도환매가능), 추가형, 모자형
보수	운용보수 인하	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26% 총보수·비용 : 1.0577% 합성총보수·비용 : 1.0577%	집합투자업자 보수 : 0.23% 총보수·비용 : 1.0277% 합성총보수·비용 : 1.0277%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		
(1) 투자전략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(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A-이상급)에 자산총액의 80%~90%수준으로 투자하고 잔여재산은 주식에 5%~10%수준을, 기타 단기대출로 운용하여 자본이득과 안정적인 이자수입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	이 투자회사는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회사로서 주로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입니다.
1. 투자목적			
2. 투자전략	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<추가> 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	이 투자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80%~90%수준으로, 주식에 5%~10%수준을 투자하는 혼합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회사로서 채권과 주식투자(시스템매매 및 공모주 투자 등)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.
3. 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<추가> -	■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-
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	업데이트	-	-

<표1>

모투자신탁	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자 투자신탁	
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투자회사 3 호(채권혼합)	회사 자산총액의 60%이상

<변경 전 1>

투자대상	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
①	채권	40% 이상	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취득 시,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
②	주식	10% 이하 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포함)	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
③	어음	40% 이하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,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어음"이라 한다)
④	자산 유동화 증권	40% 이하	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 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
⑤	금리스왵 거래	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%이하	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
⑥	증권의 대여	증권총액의 50% 이하	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
⑦	증권의 차입	회사자산총액의 20% 이하	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
⑧	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	위탁증거금합계액이 10% 이하	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이하 "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"이라 한다)
⑨	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	채권총액의 50%이하	법시행령 제81조1항1호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
⑩	단기대출, 금융기관 예치	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	
⑪	환매조건부매수	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	

적용예외 1)

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~④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3호 및 제 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- 1)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
- 2)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

- 3)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 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- 4) 회사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~④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

적용예외 2)

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⑤~⑨ 및 아래 “나. 투자제한”의 사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

적용예외 3)

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위①,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

< 변경 후 1 >
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
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	60% 이상	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	10% 이하	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주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.
③ 환매조건부매수		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
2.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(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)
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(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)
4.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
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

< 표2 >

*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

■ 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세부내용
① 주식	10%이하	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(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과 법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 (다만,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

			내로 한다)
②	채권	50%이상	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), 사채권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전자단기사채(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-이상)를 포함하고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
③	자산유동화증권	40%이하	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④	어음 등	40%이하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-이상인 것
⑤	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	40%이하	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,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)
⑥	파생상품	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	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
⑦	증권의 대여	증권총액의 50%이하	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
⑧	증권의 차입	자산총액의 20%이하	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
⑨	환매조건부 매도	증권총액의 50%이하	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일정기간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.
⑩	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		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.
⑪	단기대출		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
⑫	금융기관예치		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
⑬	환매조건부매수		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기타 사항			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~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(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(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) 4.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

< 변경 전2 >

투자대상 종류	투자제한의 내용	적용예외
이해관계인 투자	-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	
동일종목 투자	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	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
	<p>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총액의 100%까지: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- 자산총액의 30%까지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OECD 국가의 국채 등 - 시가총액비중 까지: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	
파생상품 투자	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
	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
계열회사 발행 증권취득	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	

< 변경 후2 >

투자대상	투자제한의 내용	예외
이해관계인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- 환매조건부매수	

*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

■ 동양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
투자대상	투자제한의 내용	예외
① 이해관계인 투자	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.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- 환매조건부매수	

②	동일종목투자	<p>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)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산총액의 100%까지 :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■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나 다)</u> <p>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)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※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.</p>	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
③	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	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	
④	파생상품매매	<p>장내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	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
⑤	집합투자증권 투자	<p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<u>다만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(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u></p> <p>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%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{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)를 포함합니다}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
⑥	계열회사 발행증권	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	
⑦	후순위채투자	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행위	
⑧		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위의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	

한도 및 제한의 예외

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⑤~⑨, 투자제한 ②~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 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
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
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
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
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

< 변경 전3 >

구 분	부과비율 (연간, %)	부과시기
집합투자업자보수	연 0.26%	최초설립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
판매회사보수	연 0.70%	
신탁업자보수	연 0.03%	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4%	
기타 비용	연 0.0277%	사유 발생시
총보수·비용	연 1.0577%	—
증권 거래비용	연 0.0138%	

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

[단위: 천원]

구 분	1 년 후	3 년 후	5 년 후	10 년 후
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108	338	586	1,297

< 변경 후3 >

구 분	부과비율 (연간, %)	부과시기	
집합투자업자보수	최초설정일로부터 2018 년 2 월 22 일까지	연 0.26%	최초설립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
	2018 년 2 월 23 일부터 해지일까지	연 0.23%	
판매회사보수	연 0.70%		
신탁업자보수	연 0.03%		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	연 0.04%		
기타 비용	연 0.0277%	사유 발생시	
총보수·비용	최초설정일로부터 2018 년 2 월 22 일까지	연 1.0577%	—
	2018 년 2 월 23 일부터 해지일까지	연 1.0277%	
증권 거래비용	연 0.0138%		

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

[단위: 천원]

구분	1년후	3년후	5년후	10년후
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	105	328	570	1,261

7. 정관

구분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1조(상호 및 종류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 이 회사는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 [채권혼합]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ong Yang BankPlus IPO 10 Balanced Fund [3]로 표기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이 회사는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투자회사3호[채권혼합](이하 "회사"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Tong Yang BankPlus IPO 10 Feeder Fund 3[Balanced Bond]로 표기한다.</p> <p>② <이하 동일></p> <p>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회사 2. 증권(혼합채권형) 3. 개방형 4. 추가형 5. 모자형 <p>④ 회사는 자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
제2조(목적)	모자형 구조 변경	회사는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회사는 채권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18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조항신설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할 특별한

			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
제21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모자형 구조 변경에 따른 조항 신설	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주주가 이 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22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모자형 구조변경	①~③ <생략> ④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⑤ <생략>	①~③ <이하 동일> ④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와 이 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및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 ⑤ <이하 동일>
제31조(주주총회의 소집)	모자형 구조 변경	<신설> ①~② <생략>	①회사는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두며, 주주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 ②~③<현행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음>

		<p>③제2항의-〈생략〉-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④ <생략></p> <p>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④제3항의-〈이하 동일〉-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⑤ <현행 제4항과 같음></p> <p>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⑦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의 개최사항이 이 회사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
제51조(투자대상 등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법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 시, 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2.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</p>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제1조제4항 각 호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p> <p>2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

		<p>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) (이하 “주식”이라 한다)</p> <p>3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p> <p>4. 법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취득 시, 신용등급이 A2-이상인 것(이하 “어음”이라 한다)</p> <p>5. 법제5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등에 연계되는 것 (이하 “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”이라 한다)</p> <p>6. 금리스왑거래</p> <p>7.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</p> <p>8. 증권의 차입</p> <p>9. 환매조건부채권 매도</p> <p>10.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p> <p>②<생략></p>	
--	--	---	--

			② <이하 동일>
제52조(투자한도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단,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는 회사 자산 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1.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주식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회사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 <p>3.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4.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</p> <p>5.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6.증권의 대여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</p> <p>7.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의 차입은 회사 자산총액의 20%이하로 한다.</p> <p>8.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% 이하</p>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<삭제></p> <p>1.제1조제4항에서 정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주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
		<p>가 되도록 한다.</p> <p>9.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~3. <생략></p> <p>4.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~3 <이하 동일></p> <p>4.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
제53조(자산운용의 제한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	<p>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

		<p>가.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2.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한다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</p>	<p>가.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</p> <p>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<삭제></p>
--	--	--	---

		<p>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</p>	
--	--	---	--

		<p>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.</p> <p>3.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4.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6.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</p> <p>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가격변동,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52조1항5호 내지9호 및 이 조 제1항2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</p>	
--	--	---	--

		<p>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 개시일로부터 1월간은 제52 조제1항제8호, 이 조 제1항제 2호본문,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 이 제51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 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 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결정하여야 한다.</p>	
제60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회사는 기준가격을 -<추가 >-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<생략></p>	<p>①~③ <이하 동일></p> <p>④회사는 기준가격(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을 포함)을-<이하 동일>-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⑤ <이하 동일></p>
제61조(집합투자업자보수 등)	운용보수 인하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제1항의-<생략>-금액으로 한다.</p> <p><추가>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7.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4</p>	<p>①~② <이하 동일></p> <p>③제1항의-<이하동일>-금액으로 한다.</p> <p>가.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2월 22일까지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6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7.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4</p>

		<신설>	<p>나. 2018년 2월 23일 이후</p> <p>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3</p> <p>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7.0</p> <p>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</p>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4</p>
제67조(정관의 변경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~⑤ <생략></p> <p>⑥주주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<추가>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⑦ <생략></p>	<p>①~⑤ <이하 동일></p> <p>⑥주주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⑦ <이하 동일></p>
제68조(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)	모자형 구조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 에 자산운용보고서<추가>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~2. <생략></p> <p>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추가>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 에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~2. <이하 동일></p> <p>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</p>

		<p>행령 제270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</p> <p>③</p>	<p>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</p> <p>③</p>
제69조(주주에 대한 공시)	모자형 구조 변경	<p>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<추가>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~8. <생략></p> <p>② <생략></p>	<p>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한다)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금융투자협회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~8. <이하 동일></p> <p>② <이하 동일></p>